(對外祕)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12회 이사회 자료

2022. 5. 18.

법인사무국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12회 이사회 회의순

○ 사 회 : 강제상 이사장

1. 개 회 선 언 ---------- 강제상 이사장

2. 전차 회의록 보고 ---------- 조승래 과장【2】

3. 법 인 보 고 ---------- 조승래 과장【3】

4. 회 무 처 리

1호 재정기탁자 우선협상대상자 보고 ---------- 【5】

2호 평택대학교 규정 개정 건 ---------- 【12】

3호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건 ---------- 【27】

4호 기타 안건 ---------- 【28】

5. 폐 회 ---------- 강제상 이사장

1호, 재정기탁자 우선협상대상자 보고 건

1 재정 기탁자 2차 모집 경과 및 후속 일정 안내

○ 2022.05.06. ~ 05.12. 2차 재정 기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2.05.12. ~ 05.13. 2차 재정 기탁자 서류 심사

○ 2022.05.13. 2차 재정 기탁자 서류 심사 결과 심의 및 결의(위원회)

○ 2022.05.13. 2차 재정 기탁자 면접 평가(위원회, ㈜쌤앤파커스)

○ 2022.05.17. 재정 기탁자 우선협상대상자 심의 및 의결(위원회)

○ 2022.05.23.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이사 배분 비율 심의 및 결과 확정

○ 2022.05.23. ~ 대학평의원회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정이사 후보 추천

○ 2022.06.중순 대학평의원회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정이사 후보 확정 및 교육부, 사분위 제출

○ 2022.06.27.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이사 후보 심의 및 확정

2 우선협상대상자 면접 평가 결과표

▢ 재정기탁자 면접 평가 시행

○ 2022년 5월 13일(금) 오후 4시 30분, 제2피어선빌딩 7층 국제회의장

○ 총 5개 제출처 중 서류 심사 탈락자 4개를 제외한 1개 업체 면접 시행

3 우선협상대상자 주요 현황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평택대학교) 발전계획서

(서식2)

1. 일반현황 및 연혁

성명(법인명칭)	㈜쌤앤파커스	대 표 자(법인)	최세현
직업(사업분야)	출판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18층		
연락처	02-6712-9891		
설립년도(법인)	2006년 07월 01일		
직원현황(법인)	37명		

<연혁>

2006년 06월 ㈜에스에이엠티의 자회사 ㈜에스에이엠티-유 설립
10월 ㈜에스에이엠티-유의 출판사업부로 쌤앤파커스 출범
2007년 1월 <에너지버스>, <이기는 습관> 출간
2009년 10월 ㈜쌤앤파커스로 사명 변경 및 대표이사 박시형 취임
2011년 12월 <아프니까 청춘이다> 종합 베스트 셀러 1위
2012년 7월 본사이전(서울에서 파주출판도시로)
12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종합 베스트 셀러 1위
2014년 11월 SECO로 매각 / 대표이사 이성만 취임
2016년 4월 대표이사 김상현, 최세현 각자대표 취임
2017년 12월 <미중전쟁> 출간
2018년 9월 <초격차> 출간, 2018년 올해의 책 선정
2019년 2월 <포노 사피엔스> 출간
7월 본사이전(파주출판도시에서 상암동)
2020년 7월 <달러구트 꿈 백화점> 출간, '2020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 선정
2021년 8월 <김부장 이야기 시리즈> 출간
2022년 3월 대표이사 최세현 단독대표로 변경

(주)쌤앤파커스

기업등급

재무기준
2021-12-31

등급구분
모형등급

등급	평가(산출)일자	재무기준일자	등급구분
a+	2022-04-20	2021-12-31	모형등급
a+	2021-01-13	2019-12-31	모형등급
a-	2020-01-06	2018-12-31	모형등급

사업자번호	106-86-44144	종업원수/전화번호	34명 / 02-6712-9800
법인(주민)번호	110111-3473545	당좌거래은행	-
대표자명	최세현	주소(도로명)	(03925)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18층 (상암동,누리꿈스퀘어비즈니스타워)
업종(J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기업인증현황	-
설립일자/기업형태	2006-06-12 / 외감	산업재산권현황	-

주요 신용정보

휴폐업정보	법인등기정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22-05-05	정상 2022-04-15
기업채무불이행상태	행정처분정보
정상 2022-05-11	—

주요 주주

(유한)라디안홀딩스	100.00%
-	-
-	-

주요 활동지표

국민연금	나라장터
업종상위 23.9% 2022-04-15	정보없음 2022-04-15
사업활동	피검색
정보없음 2022-04-15	업종상위 22.1% 2022-04-15

활동성 순위

표준산업분류

업종하위 23.4% 수준

주요 관계회사 및 거래처

관계회사 (단위 : %)

관계회사	출자비율
(유한)라디안홀딩스	100.00

주요 구매처 (단위 : %)

주요 구매처	거래비중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주요 판매처 (단위 : %)

주요 판매처	거래비중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주요 재무정보

주요 재무상태표 닫기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산총계	25,562	27,275	28,065	30,657	29,793
부채총계	2,710	3,033	3,008	4,079	5,202
자본총계	22,851	24,242	25,057	26,578	24,591

단위 :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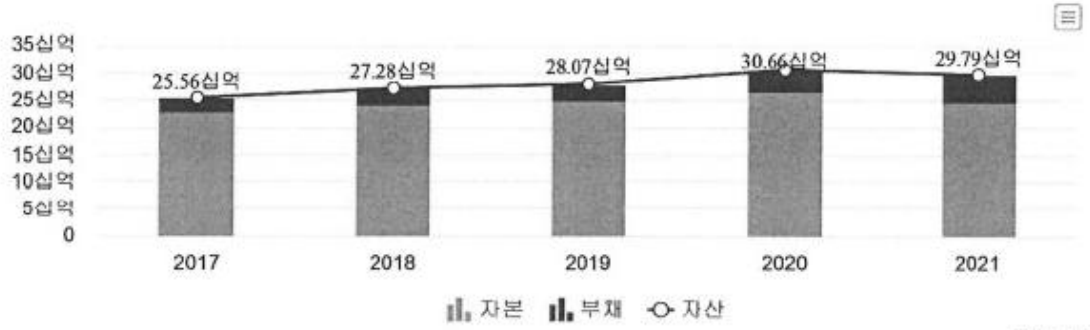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주요 손익계산서

단기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7,418	9,172	9,608	11,626	15,374
영업이익	354	1,008	433	1,359	2,041
당기순이익	576	1,390	818	1,521	1,377

단위 :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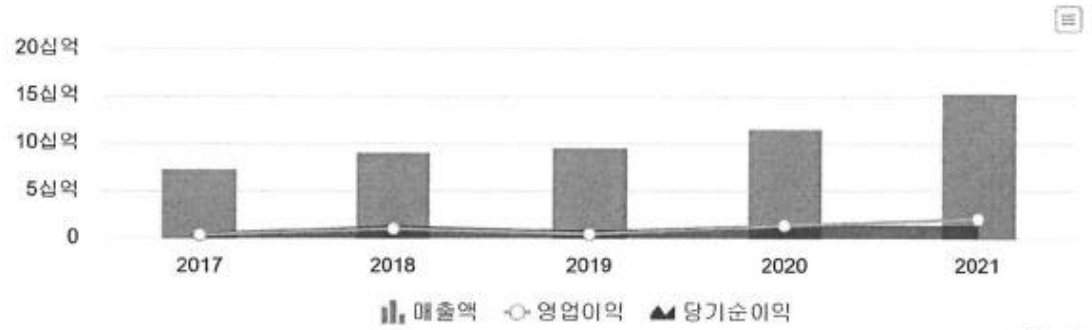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주요 재무비율

(단위 : %)

구분	년도	매출액증가율 (성장성)	영업이익률 (수익성)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이자보상배수 (안정성)	매출채권회전율 (활동성)
해당업체	2021	32.24	13.28	82.54	100.79	7.76
산업평균	2020	10.74	1.65	37.41	13.66	14.47

2호, 평택대학교 규정 개정 건

1 규정 개정 내역

순번	규정명	제·개정	시행일	구분
1	교직원보수규정	2022.05.00	2022.05.00	개정
2	교직원 연봉계약 규정	2022.05.00	2022.05.00	개정

2 규정 개정 사유서

순번	규정명	개정 사유	발의부서
1	교직원보수규정	▸ 대학 보충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조항 마련	기획예산팀
2	교직원 연봉계약 규정	▸ 기 시행되고 있는 신임 전임교원 연봉 책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 기 시행되고 있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연봉 책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 정년트랙 전환 상승분 지급 및 산정방식 기준 마련	기획예산팀

3 규정 개정 내용

1.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 기획예산팀

변경전	변경후	사유
제14조(수당의 지급)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임금협약 등 적용대상자는 협약사항에 따른다.(개정 2014.08.26., 2021.12.06.) 1. 교직원 연봉계약 규정에 의한 직책, 보직수당 2. 교직원 복리증진(체력단련비 2회, 명절휴가비 2회)을 위한 상여금(개정 2018.04.25) 3. 각종 대내외 평가 준비 및 진행을 위한 평가수당 4. 입시관련 부서의 입시 준비 및 진행을 위한 각종 수당 5. 학생취업 및 취업보조를 위한 수당 6. (삭제 2018.04.25.) 7.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부서 업무보조수당 8. 직무와 관련된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정도를 감안한 업무수당 9. 교직원의 근속 년수(10년 단위)에 따른 포상금(개정 2018.04.25.) 10. 대학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의 인센티브(신설 2016.12.15., 2018.04.25.) 11. 교원업적평정 또는 직원인사고과평정에 따른 성과급 (신설 2022.02.28.) **12. <신설>** ② <생략> ③ 상기 1항의 5호, 10호 사유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재가를 거쳐 지급한다. (신설 2018.04.25.)(개정 2022.02.28.)	**제14조(수당의 지급)**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임금협약 등 적용대상자는 협약사항에 따른다.(개정 2014.08.26., 2021.12.06.) 1. 교직원 연봉계약 규정에 의한 직책, 보직수당 2. 교직원 복리증진(체력단련비 2회, 명절휴가비 2회)을 위한 상여금(개정 2018.04.25) 3. 각종 대내외 평가 준비 및 진행을 위한 평가수당 4. 입시관련 부서의 입시 준비 및 진행을 위한 각종 수당 5. 학생취업 및 취업보조를 위한 수당 6. (삭제 2018.04.25.) 7.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부서 업무보조수당 8. 직무와 관련된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정도를 감안한 업무수당 9. 교직원의 근속 년수(10년 단위)에 따른 포상금(개정 2018.04.25.) 10. 대학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의 인센티브(신설 2016.12.15., 2018.04.25.) 11. 교원업적평정 또는 직원인사고과평정에 따른 성과급 (신설 2022.02.28.) **12.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각종 보수 또는 수당 금액이 감소한 경우, 이후에 감소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수당(신설 2022.00.00)** ② <현행과 같음> ③ 상기 1항의 5호, 10호, **12호**의 사유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재가를 거쳐 지급한다. (신설 2018.04.25.)(개정 2022.02.28., **2022.00.00**)	▸보충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조항 마련

2. 교직원 연봉계약 규정(안) : 기획예산팀

변경전	변경후	사유
제6조(보수) ① 보수는 기본급(호봉 승급비 포함)과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호봉승급비는 근무 년수에 따른 차액으로 매년 연봉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호봉승급비라 함은 근무 년수에 따른 자연승급분을 기본급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교직원별로 구분하며, 호봉승급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2. 13.> ② 보수는 연봉을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③ 기본급은 지난 연도의 지급총액(연구비와 급량비는 포함하고 직책수당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성과급은 제7조의 평가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 4. 22.> ④ 삭제 <2000. 2. 18.> ⑤ 삭제 <2007. 6. 14.> ⑥ 수당은 교직원 보수규정에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직책수당은 별도로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9. 4. 22.> ⑦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학비보조, 초과강사료 등은 별도 규정에 의하여 따로 지급한다. ⑧ 교원인사규정 제51조(정년트랙전환)에 의하여 비정년트랙에서 정년트랙으로 전환된 교원에 대한 연봉지급액은 교직원보수제도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신설 2021.12.21.)	제6조(보수) ① 보수는 기본급(호봉 승급비 포함)과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호봉승급비는 근무 년수에 따른 차액으로 매년 연봉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호봉승급비라 함은 근무 년수에 따른 자연승급분을 기본급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교직원별로 구분하며, 호봉승급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2. 13.> ② 보수는 연봉을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③ 기본급은 지난 연도의 지급총액(연구비와 급량비는 포함하고 직책수당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성과급은 제7조의 평가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 4. 22.> ④ 삭제 <2000. 2. 18.> ⑤ 삭제 <2007. 6. 14.> ⑥ 수당은 교직원 보수규정에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직책수당은 별도로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9. 4. 22.> ⑦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학비보조, 초과강사료 등은 별도 규정에 의하여 따로 지급한다. **⑧ 신임 교원의 연봉은 경력산정 후 신임교원 연봉조견표에 따라 산정한다. 이때의 경력산정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산정하고 연봉조견표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00.00)** **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력산정은 정년트랙과 동일하게 산정하되 연봉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신규 임용 시 연봉의 85% 수준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원인사규정 제3조(전임교원의 구분) 3항에 의한 직무에 따라 구분되는 교원들과 교양 또는 외국어 강의를 담당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신임 전임교원 연봉 책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이미 시행되고 있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연봉 책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변경전	변경후	사유
	의 연봉은 개별 계약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00.00) **⑩ 교원인사규정 제51조(정년트랙전환)에 의하여 비정년트랙에서 정년트랙으로 전환된 교원의 연봉 상승분 산정은 별표2에 의하고 해당 상승분은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신설 2022.0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8항과 9항 적용 이전에 임용된 교원의 호봉획정 및 연봉책정은 이 조항의 적용에 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동조 10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정년트랙 전환 상승분 지급 및 산정방식 기준 마련 조항 신설 ▶이미 시행하고 있던 사항들 이기에 경과 조치 명기

변경후
[별지] 연봉계약서 : <변경 없음> [별표 1] 교원호봉승급표 / 직원호봉승급표 : <변경 없음> **[별표 2] <신설 2022.00.00>** **비정년트랙교원 정년트랙 전환시 연봉 상승분 계산식** **정년트랙 전환 상승분 = 직전연도 확정연봉 × {(100/85)-1}**

4 회의록

- 교무위원회 회의록(2022.04.13.)

- 교무위원회 회의록(2022.04.19.)

3호,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건

직전 이사회(2022. 4. 27.)		금번 이사회(2022. 5. 18.)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이 사 장	강제상		
이 사	전진한		
이 사	최재정		

4호, 기타안건